

서울特別市永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8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8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保健所長 文仁弘)

가. 제안이유

-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 1992. 3. 8)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 마련.

나.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안 제3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법 (법률 제 4355호, 1991. 3. 8)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 883호, 1991. 10. 10)의 전문개정으로 인해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등)"로 하고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 (1종 보호대상자) 및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결핵제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92. 7. 14 시달한 개정조례준칙(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외 6개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서울特別市永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1992. 8. 1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보건소법(법률 제4355호, 1991. 3. 8)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마련.

2.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안 제3조제2항)

3. 관련법규

- 보건소법 제8조
 - 제8조(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3조(보호대상자의 구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47조

· 47조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이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이 부담한다.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의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 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쥐, 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

· 제36조(보호비용의 부담구분)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도가 직접 행하는 보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도가 부담한다.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도가 부담한다.
3.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이 부담한다.
4.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의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제1호

·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 · 舊條文對備表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수수료의 면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보호대상자) 및 녹색(2종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 의료보호수첩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 신 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